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차규근의원 (2212363)	2025.08.0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정춘생의원 (2213118)	2025.09.1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임미애의원 (2216136)	2026.01.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03.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박정현의원 (2216403)	2026.01.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03.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8.26.)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